해외입국자 '음성확인서' 제출관련 FAQ(6.27.시행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2022. 6. 27.(월)>

1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"음성확인서"도 인정되는지?

○ **"음성확인서"** 의 **검사방법 항목**이 **한글이나 영문**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

○ 단,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**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**과 **번역인증서류(번역인증문*)를** 함께 **제출**해야 함

*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. 공인번역사무소(공인번역가 포함) 번역본은 인증 불요

※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

2. "음성확인서"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?

○ 유전자 증폭 검출(NAATs, 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. 또는,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ntigen, AG)도 인정 가능

-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**검체 채취를** 의료인 등 **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**

※ 항체(Antibody)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

3. "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?

○ **(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) 출발일** 0시 기준 **48시간(2일) 이내 검사**

○ **(전문가용 항원검사) 출발일** 0시 기준 **24시간(1일) 이내 검사**

* (예시) '22.5.23. 10:00시 출발 시 '22.5.21.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5.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 음성확인서

※ 항만을 통한 입국은 출발일 0시 72시간 이내 발급 기준 PCR음성확인서 제출 유지(다만, 출발일 0시 24시간 이내 검사·발급한 항원검사도 인정)

4. "음성확인서"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?

○ **성명**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-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, **생년월일**(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), **검사방법***, **검사일자**, **검사결과**, **발급일자**, **검사기관명** 등 * NAATs, PCR, LAMP, TMA, SDA, RAT, Antigen 등

5.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(인후도말검사) 외에 SALIVA TEST(타액검사)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?

○ 검체 채취 방식*과 관계없이 **분석 방식이 RT-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**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, **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** 가능

- 그 외 검사기관,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(3번 질의 참고)은 준수

* 단,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'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'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6. '음성확인서'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?

○ **병원 이메일,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**으로 **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**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7. "음성확인서"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,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?

○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**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신고시스템(Q-code)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** 또는 출력본 **제출**

- 다만, 입국 후 **사후제출도 인정**하고 있으나,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(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)

8.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"음성확인서" 만 인정되는지?

○ **검사기관 상관없이**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5.23일~)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

- 다만, **검사방법(PCR 등)이나** 검사 및 **발급 시점**(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) 등 그 외 **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(FAQ 1~4 등 문항 참고)**

9. 경유하여 공항 입국한 경우 '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?

○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

- **(B국가를 입국한 경우) B국가(경유국)에서**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**48시간 이내 PCR검사**(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)한 음성확인서 제출
- **(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) A국가(최초출발국)에서**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**48시간 이내 PCR검사**(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)한 음성확인서 제출

※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, 출발국가(또는 경유국)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(**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**)

- 예시) A국가(5.23일 출발) → B국가(5.23일 도착, 5.24일 출발) → 우리나라(5.24일 도착)

구분	출발 기준	비고
B국가를 입국(체류)한 경우	**5.24일(B국가 출발일) 0시 기준 48시간 (항원검사 24시간) 이내 발급**	※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(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)
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	**5.23일(A국가 출발일) 0시 기준 48시간 (항원검사 24시간) 이내 발급**	

10.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"음성확인서" 제출 대상인지?

○ **A비자**(A1: 외교, A2: 공무, A3: 협정) 소지자, **예방접종완료자**도 입국시 PCR·RAT음성확인서 **제출 대상**

11.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, "음성확인서"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○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(환승객)의 경우 **"음성확인서" 제출** 불요

12. 영유아 경우에도 "음성확인서"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○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, **6세 미만** (입국일 기준)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**제출 면제**(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)

○ 다만, 입국 후 **3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**

13. "음성확인서" 제출 제외 대상은?

○ **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**
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목적·공무국외출장 목적*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7215호('22.6.22.) 반영

○ 항공기 승무원(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)

○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

○ **확진일*** 로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**내국인**
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○ **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 **인 장기체류외국인**

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,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

14. '음성확인서'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

○ **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 미달 포함) 시 모든 입국자**(내국인 포함)는 **항공기 탑승이 제한**(' 21. 7. 15.~)

- 다만, 입국일 기준 **만6세미만 영유아**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**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(13번 문항 참고)**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**항공기 탑승 가능**

○ 국내 **도착 후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등이 확인된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**(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'주한미군 신분증 등' 중 한 가지 이상 소지, 19번 답변 서식참고)은 **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** 실시(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)

- 단기체류외국인 등 **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**

○ **음성확인서 제출**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**거짓 서류를 제출**한 것이 **확인된 경우**에는 **「검역법」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**

15.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, "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 기준(PCR 48시간, 항원검사 24시간이내)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?

○ 운송수단의 장(항공사, 선사 등)이 **기상악화,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**로 **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**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16.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(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)한 대상은?

○ **확진일*** 로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*인 **내국인**
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○ **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**인 장기체류외국인**

("외국인등록증", "국내거소신고증", "영주증", '주한 공관원 신분증', '주한미군 신분증 등' 중 한 가지 이상 서류소지자에 한함, 19번 답변 서식참고)

17.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(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)는 입국 후 3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?

○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**재감염, 변이여부 등을 확인**하기 위해, **예외없이 입국 후 3일이내 검사(PCR검사) 실시**

18.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?

○ **(증빙서류) 의료·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**이 **발급**한, **'확진일**(또는 격리 시작일)**'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 확인**

* 격리통보서, 격리해제 사실확인서, 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·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

- **(확진일)** 출발일로부터 **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**(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)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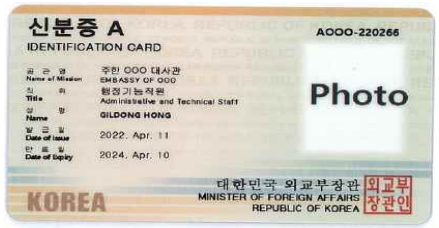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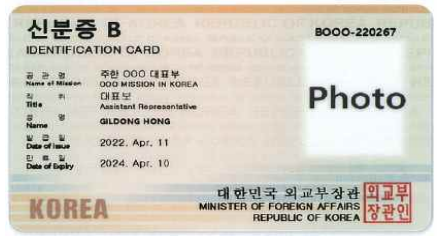
구 분	확진일		출발일
입국지원 가능 예시(1)	'22. 4. 13. ('출발일' -40일)	⇒	5. 23. (입국지원 가능)
입국지원 가능 예시(2)	'22. 5. 13. ('출발일' -10일)		5. 23. (입국지원 가능)
입국지원 불가 예시(1)	'22. 4. 12. ('출발일' -41일)		5. 23. (입국 지원 불가)
입국지원 불가 예시(2)	'22. 5. 14. ('출발일' -9일)		5. 23. (입국 지원 불가)

- **(발급 언어)**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·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(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, 질의 1 참고)

19. 국내 확진 후 완치된 장기체류외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?

○ **(증빙서류)** ①국내에서 발급한 **'격리통보서(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)'** 및 ② '외국인등록증' (또는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'주한미군 신분증 등' 도 가능)

- **(확진일)** 출발일로부터 **'10일 전 40일 이내' 국내에서 확진**
- **(외국인 등록증 등 서식) 아래 표 참고**

외국인등록증	국내거소신고증
	
영주증	주한 공관원 신분증(외교관신분증)
	
주한 공관원 신분증(영사신분증)	주한 공관원 신분증(국제기구신분증)
	
주한 공관원 신분증(신분증A)	주한 공관원 신분증(신분증B)
	

주한미군 신분증	여권 내 미군 관계자(A3 사증) 표식
